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20

발의연월일: 2022. 8. 18.

발 의 자:이성만・신정훈・송갑석

강득구 · 허종식 · 정일영

민병덕 • 박성준 • 이동주

이학영 · 송옥주 · 전용기

윤미향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최근 주요 철광석, 원유, 펄프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기업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받았다는 업체는 4.6%에 불과하며, 현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 10곳중 7곳은 생산량 감축 및 일자리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.

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. 그러나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급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.

따라서 하도급대금 조정 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주요 원자 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게 함으로써,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해야 함(안 제3조제2항).
- 나. 원사업자는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의 범위에서 변동할 경우, 변동분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야함. 다만,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 이상으로 하락하였을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기재된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함(안제15조의2 신설).
- 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이 반영된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,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건, 방법 및 절차"를 "내용, 목적물등을 제조·수리·시공하거나 용역수 행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및 그 가격, 제15조의2에 따른 주요 원재료 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·방법,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·방법·절차"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5조의2(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 원사 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서면 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.
 - ② 원사업자(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)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제 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3 이상 하락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.

제25조제1항 중 "제14조부터 제16조까지"를 "제14조, 제15조, 제15조의 2, 제16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2항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했 개 아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) ① (생략) 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 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 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 ----내용, 목적물등을 제조·수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 리·시공하거나 용역수행에 필요 건.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 한 주요 원재료 및 그 가격. 제 15조의2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 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[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2호에 조정 요건·방법, 제16조의2제1항 따른 전자서명(서명자의 실지 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건·방법·절차-----말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. ③ ~ ⑨ (생 략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5조의2(주요 원재료 가격 변 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)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

제25조(시정조치)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, 제3조의4, 제4조부터 제12조까지, 제12조의2, 제12조의3, 제13조, 제13조의2,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,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, 법 위반행위의 중지, 특약의 삭제나 수정, 향후 재발방지, 그 밖에 시정에

에서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	격
이 100분의 3 이상 상승한	때
에는 제3조에 따른 서면에	서
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	을
증액하여야 한다.	
② 원사업자(중소기업자로	<u>한</u>
정한다)는 제조등의 위탁을	<u>한</u>
후에 제3조에 따른 서면에	서
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	<u>10</u>
0분의 3 이상 하락한 때에	는
제3조에 따른 서면에서 정	<u>한</u>
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	할
<u>수 있다.</u>	
25조(시정조치) ①	
제14조, 제15조, 제15조의	12,
제16조	

을 한 후에 제3조에 따른 서면

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